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15-112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고시 004-204호(2004.6.25)]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체부제1구역·누하제1구역·필운제1구역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3호(2015.10.8)] 하였기에 동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체부제1·누하제1·필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고시합니다.

체부제1구역	누하제1구역	필운제1구역
-위치 : 체부동127번지일대 -면적 : 42,479㎡	-위치 : 누하동8번지일대 -면적 : 22,171㎡	-위치 : 필운동129번지일대 -면적 : 13,865.4㎡

3.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명칭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누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필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재지	종로구 체부동183	종로구 누하동36-1	종로구 필운동130-3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취소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일

명칭	체부제1예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누하제1예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필운제1예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일	2004.12.4	2005.6.3.	2008.10.13.
취소일	고시일로 함		

나. 취소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동법 제16조의2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함

5. 기타사항 :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주택과(☎2148-262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 - 91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3조)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7조)
 -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종로구 복지지원과(담당: 김미란)
- 연 락 처 : 전화 02-2148-2512, 팩스 02-2148-5822
- 전자우편 : 2009022704@mail.jongno.go.kr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수송동)
- 기재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 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3조)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7조)
 -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 라 함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7세 미만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차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

2.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법 제3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그밖에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법 제8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의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922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 우리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명시(안 제5조)
- 나. 위원회 운영내용 신설(안 제6조)
- 다.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안 제7조)
-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신설(안 제8조)
- 마. 회계공무원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종로구 도시디자인과(담당: 최재성)
- 연 락 처 : 전화 02-2148-2753, 팩스 02-2148-5926
- 전자우편 : 200902282001@mail.jongno.go.kr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수송동)
-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 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10.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 우리 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명시
- 나. 위원회 운영내용 신설
- 다.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신설
- 마. 회계공무원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5.10.16. ~ 11.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고물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6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디자인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정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광고물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 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u>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 <u>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⑥ 이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u> <u>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u>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 <u>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 <u>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디자인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정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생략) 〈신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927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조정(안 제6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종로구청 기획예산과(담당: 전영희)

○ 연 락 처 : 전화 02-2148-1366, 팩스 02-2148-5813

○ 전자우편 : fullyh@korea.kr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 기재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1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조정(안 제6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을 “주민”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 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구민” 을 “주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각각 “예외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기타 범위에 관하여” 를 “그 중 “요하거나” 를 “필요로 하거나” 로 “그
러하지 아니하다.” 를 “예외로 한다.” 로 한다. 밖의 범위에” 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종로구</u> (이하 “구” 라 한다)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u>서울특별시 종로구민</u> (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종로구</u> ----- ----- ----- <u>주민</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u>뜻</u> -----.		
1. “위원회”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따라 <u>구가 구성·운영하는 심의회·협의체·협의회·위원회</u> 를 말한다.		1. ----- ----- <u>서울특별시 종로구</u> <u>(이하 “구” 라 한다)</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u>구민</u>		4. ----- <u>주민</u>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		② ----- ----- ----- ----- ----- ----- ----- <u>예외로 한다.</u>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 이상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 ----- ----- ----- 그 밖의 범위에 -----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 -----

현행	개정안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u>필요로 하거나</u> ----- ----- ----- <u>예외로 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u>시행</u> <u>에</u> ----- -----.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93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별지 서식)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4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 여성가족과, 전화 : 2148-2325, FAX : 2148-5824

담당 : 남희수, E-mail : 20121102152@mail.jongno.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별지 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4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 을 “양성평등”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여성발전” 을 각각 “양성평등” 으로 “제24조제3” 을 “제31조제3항”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여성위원회” 를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관련사업” 을 “양성평등 관련사업”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4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와 제2호 중 “여성발전” 을 각각 “양성평등”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여성발전” 을 각각 “양성평등” 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여성발전” 을 각각 “양성평등”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양성평등 ----- ----- -----.
제2조(기금의 목표금액)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목표금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목표금액) ① ----- ----- 양성평등 ----- ----- 제31조3항 ----- ----- ----- 양성평등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 ----- -----.
1. ~ 3. (생 략) 4.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사업 추진 실적	1. ~ 3. (현행과 같음) 4. --- 양성평등 관련사업 --- ---
제8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4조에 따른 ----- -----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생 략) 1. <u>여성발전기금</u>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u>여성발전기금</u> 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현행과 같음) 1. <u>양성평등</u> ----- --- 2. <u>양성평등</u> ----- ---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93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용어 변경사항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그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다. 현행의 여성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 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 여성가족과

전화 : 2148-2325

FAX : 2148-5824

담당 : 남희수

E-mail : 20121102152@mail.jongno.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용어 변경 사항등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 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 명시
- 다.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마.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차별·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 사.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 아.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둠
- 자. 현행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하여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청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인사관리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2.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 친화제도 확산 지원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성차별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해당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모성보호) 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구청장은 가정, 어린이집, 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전용 주차구역 및 공중화장실 확충 등 여성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제20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 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 훈련 등을 지원 또는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분석평가와 관련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예산·일자리·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년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7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양성평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규칙에서 정한 목표금액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결산 및 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5-935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사항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 전화 : 2148-2551, FAX : 2148-5823, 담당 : 박경주, E-mail : 2009028224@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1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사항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6. ~ 11. 05. (20일간)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급자” 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로 “최
저생계비의100분의 150 이하” 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생계·의료급여 수급자</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생계·의료급여 수급자</u> ----- ----- <u>기준 중위소득 60% 이하</u> -----.
제6조(조사 실시) 제4조에 따른 확인은 지원대상자 조사결과와 전산 및 그 밖의 부상 자료를 이용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5-936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2조 ~ 제4조)

－ “의료급여”를 “의료급여기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

나.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근거법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 (참조: 사회복지과, 전화: 2148-2554, FAX: 2148-5823, 담당: 이지은, E-mail: lje0215@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2조 ~ 제4조)

－ “의료급여” 를 “의료급여기금” 으로 “대불금” 을 “대지급금” 으로 개정

나.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근거법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정비(안 제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25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6. ~ 11. 05. (20일간)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료급여” 를 각각 “의료급여기금” 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수입” 을 “그 밖의 수입” 으로 한다.

3. 「의료급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제4조제2호 중 “대불금” 을 “대지급금” 으로 한다.

제6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 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 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서 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 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 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 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 ----- ----- 의료급여기금 ----- ----- -----.
제3조(세입) (생 략) 1. ~ 2. (생 략) 3. 법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 4. ~ 5. (생 략) 6. 이자 등 기타수입	제3조(세입)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 금 4. ~ 5. (현행과 같음) 6. -----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생 략) 1. (생 략)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의 대불금 3. ~ 5. (생 략)	제4조(세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대지급금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준용) ----- ----- 운영에 ----- ----- ----- -----.

공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938호****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
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1. 개정이유**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종로구의 도서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나. 도서관의 위치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다.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사항 신설(안 제8조)
-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 정비(안 제9조)
- 마. 도서관 위탁 규정 정비(안 제10조)
- 바. 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 규정 정비(안 제11조)
- 사. 도서관 사용과 관련한 사용신청, 사용료 등 개정(안 제16조)
- 아. 기증자료 관리 규정 정비(안 제23조)
- 자. 도서관의 위치, 사용료, 수수료 규정(별표 1 ~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
과장, 주소:(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42, 402호(수송동 146-1), ☎ 2148-2024,
FAX : 2148-58221, 담당 : 이지애 E-mail : nadin@mail.jongno.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종로구의 도서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나. 도서관의 위치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다.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사항 신설(안 제8조)
-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 정비(안 제9조)
- 마. 도서관 위탁 규정 정비(안 제10조)
- 바. 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 규정 정비(안 제11조)
- 사. 도서관 사용과 관련한 사용신청, 사용료 등 개정(안 제16조)
- 아. 기증자료 관리 규정 정비(안 제23조)
- 자. 도서관의 위치, 사용료, 수수료 규정(별표 1 ~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서관법」 제27조, 제30조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6. ~ 11.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도서관을 설치·운영 하는데”를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서관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서관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의 제목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과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공립공공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예산에 관한 사항
5.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이용자 등으로 구성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직원 중 1명이 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를 “구청장은 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위탁한다.”를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도서관 평가와 심사

시”를 “수탁기관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 평가와 심사 시”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장 또는 운영인력을 둔다”를 “사서직이 아닌 관장 또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도서관을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관장을 임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구청장이 정한다. 단,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람에게 한하여”를 “사람에게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의 시청각실,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이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
3.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도서관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강좌 수수료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 ① 법 제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본다.

[별표 1]

도서관 위치(제3조의2 관련)

연번	도서관명	위 치
1	아름꿈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8가길 19
2	청운문학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6길 47
3	작은도서관 삼봉서랑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4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길 20
5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34-3
6	청운효자동 북카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길90
7	꿈꾸는 평창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65
8	무악다솜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4길 36
9	홍파랑 북카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154
10	지혜만들기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5가길19
11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19
12	혜화마을 북카페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2
13	창신1동하람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8-6
14	창이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44
15	송인마루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
16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길 43

[별표 2]

사용료 (제16조 관련)**1.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가. 청운문화도서관**

구분	기준시간	기본사용료	비 고
한옥1실	1회 2시간	1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순수 문학 및 독서 관련 목적 이외의 세미나, 회의 등은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추가 적용
한옥2실	1회 2시간	20,000	
한옥세미나실	1회 2시간	44,000	
대청마루	1회 2시간	20,000	
누 정	1회 2시간	20,000	
안 마 당	1회 2시간	36,000	

나. 청운문화도서관의 도서관

구 분	사용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프로그램실(20㎡이상)	1회 2시간	2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프로그램실(20㎡미만)	1회 2시간	16,000원	

2. 부대설비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사용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냉·난방	1회 2시간	5,000원	-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부대설비가 별도로 있는 도서관만 해당함
음향기기	1회 2시간	5,000원	
빔프로젝트	1회 2시간	5,000원	
노트북 컴퓨터	1회 2시간	5,000원	

[별표3]

사용료 반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사 유	반환금액
시설 사용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부대설비 사용료	부대설비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별표 4]

수수료 등(제17조 관련)

1. 회원증 발급 수수료

구 분	금 액	비 고
신규발급	무료	1명 1매마다
재발급	1,500원	

2. 수 강 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강습, 강좌	월 5만원 이하	주1회(월4회), 1회 50분 이상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서관 설치·운영에 ----- -----.
제2조(정의) (생 략) 〈신 설〉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도서관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위원회
제8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도서관에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구의회 의원,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도서관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직원 중 1명이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원 1명과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예산에 관한 사항 5.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이용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직원 중 1명이 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3(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민간 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단서 신설〉	제10조(민간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 ----- ----- ----- ----- ---. 다만,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현 행	개 정 안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를 거쳐 <u>재위탁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도서관 평가와 심사시 수탁기관과 관계된 위원회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⑤ (생 략) 제11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다만,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운영 인력을 둔다. ② 도서관을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3조(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관이 정한다. 제15조(자료 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자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은 예외로 한다. ③ -----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와 심사 시 -----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직 및 인력) ① ----- ----- ----- ----- ----- 사서직이 아닌 관장 또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도서관을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관장을 임명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구청장이 정한다. 단,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제15조(자료 대출) ① ----- ----- 사람에게만 -----

현 행	개 정 안
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6조(시설의 이용제공 등) ① 강당, 시청각실, 회의실 등 도서관 및 그 부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의 이용제공 등) ① 도서관의 시청각실,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이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 3.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도서관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규모를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의 수수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도서관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강습·강좌 수수료는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제23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의 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강좌 수수료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3조(기증자료) ① 법 제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운영위원회----- -----.